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0.2.18>

※제 호				
차대번호(원동기형식)표기등명령서	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 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자동차	등록번호		형식	
	차명		차종	
명령사항	기존표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대번호 :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동기형식 :		
	명령표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대번호 :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동기형식 :		
	표기(지움)시한		자동차제시일시	
	자동차제시장소			
표기(지움)명령사유	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명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교통안전공단이사장 <input type="checkbox"/>				
○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표기를 받거나 지울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3조제2항).				
○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7호)				

33331-30011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